

## 제 4 주제

중국의 법문화로 살펴본  
인민조해(人民調解) 제도의 특징



## I 들어가는 말

중국은 그 역사만큼이나 문화적 저변과 철학적 깊이가 풍부한 나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중국 문명은 주변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중국 문명의 정신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교사상은 사람이 근본이며 법률과 도덕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본주의(人本主義)를 기반으로 한다. 중국은 이러한 인본주의에 근거해 소송을 경계하고 화해를 권장하는 등 전통적으로 ‘비소송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중국의 뿌리 깊은 화해 중시 풍조는 중국인에게 분쟁해결 기제로서의 조정이 갖는 의미를 잘 나타내준다.

화해를 중시하는 중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기반은 중국의 각 시대별로 발달했던 다양한 조정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근대화 이후 현대 중국에서는 시장경제의 확대 발전 속에 분쟁이 다양해지고 사회적 모순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인민조해(人民調解) 등의 제도에서 이전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 중국의 고유한 법문화와 전통적 조정제도의 양상을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의 조정제도의 뿌리와 흐름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전통적 법문화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러한 중국의 문화적 특징이 특히 잘 드러난 전통적 ADR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의 인민조해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실제 사례, 최근 중국에서 불고 있는 조정 활성화의 움직임 등을 함께 살펴보겠다.

## II 중국의 법문화와 전통적 조정제도

### 1. “반드시 소송이 없도록 하라”

유교에서는 예치(禮治)의 구현을 위해 양심(良心)과 수신(修身), 나아가 극기복례(克己復禮)

하는 인격 함양과 함께 사회적으로는 양보하고 배려하여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송은 조화에 대한 파괴이자 충돌, 구성원 상호 간의 극단적 대립을 의미하였기에 유교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무송(無訟)의 상태였던 것이다.<sup>1)</sup> 따라서 유교 사상을 숭상한 사회의 지배계층은 쟁송을 일으키지 않도록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유교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법문화는 유교 정신의 집약체인 사서삼경(四書三經)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공자(孔子, BC 551-BC 479)의 가르침을 담은 『논어』는 “반드시 소송이 없도록 하라”(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sup>2)</sup>는 공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대사구(大司寇)라는 벼슬에 이르렀는데, 이는 오늘날의 법무부 장관 또는 대법원장의 자리에 해당하는 최고 재판관의 지위였다. 송사를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소송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던 것은 송사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천하에 송사가 없도록 분쟁이 조기에 조화롭게 해결되는 비송(非訟)사회의 건설을 꿈꿨던 공자의 이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역경』(易經) 또한 “소송은 가장 큰 흉이다”(訟有孚窒惕中吉 剛來而得中也 終凶 訟不可成也)<sup>3)</sup>라고 이르고 있으며,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유파 중 하나로 법치주의를 제창한 법가(法家) 역시 법률의 목적을 ‘공평과 정의의 실현’보다는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것’에 두었으므로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에의 호소를 장려하지 않았다.<sup>4)</sup> 도가(道家)의 사상가인 장자(莊子, BC 369-BC 289)도 ‘법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며,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에 바로 법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소송을 회피하고 당사자 간 화해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역사적 배경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풍토가 오랜 기간을 거쳐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박순선, 2006, “중국민사소송에서의 조해(調解)제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28쪽.

2) “자알, 청송 오유인야 필야사무송호 :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송사를 재판하여 처리하는 것은 나도 남들과 같지만, 송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論語』, 안연편(顏淵篇) {공자, 2012, 『논어』, 김원중 역(파주: 글항아리), 225쪽} .

3) “송유부질척중길 강레이득중야 종홍 송불가성야 : 이길 믿음이 서로 있어 화해가 되지 않으니 마음을 바꾸어 중간에 그만 두는 것이 좋으며, 소송을 끝까지 밀어부치면 흉하게 된다.”

『周易』, 주역원경(周易原經) {2012, 『주역』, 유덕선 역(서울: 홍문관), 334-336쪽} .

4) 이 단락의 법가와 도가 사상에 관한 내용은 황밍허, 2008, 『법정의 역사』, 이철환 역(서울: 시그마북스), 359-360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 2. 명판관의 중요성

사회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법적인 절차 등 제도적인 장치를 충실히 마련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서구적 관점과 달리 제도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즉 정의로운 재판관의 판결에 의지하는 것이 중국의 전통적 사고방식이다.

서양에서는 성문화된 법률과 제도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여기므로, 결과에 앞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 따르면,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중략)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제도의 체계가 설립되고 공평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sup>5)</sup>고 하여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균등과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재판관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역할을 할 뿐,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반면 중국의 전통적 법문화에서는 도덕이 정치와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법과 도덕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법은 곧 도덕이며, 절대적 진리와 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법이라는 제도보다는 재판관 개인이었다. 재판관 개인의 역량과 품성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는 주된 열쇠이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관의 재량권이 매우 컸다. 공명정대한 명 재판관인 청천(青天)이 약자를 대변하여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다수 남아있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특히 송나라 시대 유명한 판관이었던 포중(包拯)은 중국 무속에서 신으로도 숭배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소설 및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수차례 각색되기도 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소송 외 분쟁해결 과정에서도 당사자 간 협상보다는 공평하고 덕망 있는 제3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려 조정안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아 조정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했으며, 교도적(教導的) 성격이 짙었음을 알 수 있다.

5) Rawls, J., 2003, 『정의론』, 황경식 역(서울: 이학사), 136-137쪽.

6)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재판의 결과를 가리켜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한 서양의 법언은 절차가 정의롭지 않다면 재판의 결과가 정의롭더라도 가치가 없다는 이러한 철학을 잘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전 미식축구 선수인 O. J. 심슨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후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전 세계적인 화제를 낳은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 TV 방송국에서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는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심슨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황명혜(2008), 336-337쪽).

### 3. 전통적 조정제도의 모습

중국의 이러한 화해를 중시하는 문화적 바탕은 여러 시대를 거쳐 중국의 사회적 특징과 맞물리면서 각 시대의 특징적인 조정제도로써 자리를 잡았다. 중국 전통사회에서는 사법기능이 행정기능과 분화되지 않았고, 특히 광대한 국토를 관장할 만큼 관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사적분쟁의 해결은 마을공동체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다.<sup>7)</sup> 기록에 따르면 약 3,000년 전 서주(西周) 시대에서부터 이미 조정이 이루어진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진(秦), 한(漢) 시대에는 향(鄉) 이하의 마을 단위에 조정기관을 설립하였다고 한다.<sup>8)</sup> 각 시대별 조정의 모습 중 특징적인 몇 가지를 아래에 소개한다.<sup>9)</sup>

- (1) 진나라의 비공실고(非公室告) : 엄격한 법치주의를 표방했던 진나라는 정책적으로 범죄의 고발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가족 간 분쟁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마을의 장로, 시골유지 등이 유교적 가치와 관례 등을 근거로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진나라에서는 5천 호 이상의 큰 향(鄉)에는 유질(有秩), 작은 향에는 색부(嗇夫)라는 관직을 두어 조세와 부역을 형평 있게 부과하도록 하고 민간 분쟁을 조정, 화해시키는 책임을 맡게 했다.<sup>10)</sup>
- (2) 한나라의 춘추결옥(春秋決獄), 이례입법(以禮入法) : ‘춘추’(春秋)는 공자가 엮은 중국의 사서로, ‘춘추결옥’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형벌을 결정하며, ‘이례입법’은 ‘예로써 법을 세운다’는 뜻이다. 한무제(漢武帝)는 법률에서 죄에 따른 형벌을 정하고 있더라도 법률보다는 유교적 가르침을 우선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등 법률로써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사전 조정을 선호하였다.
- (3) 명나라의 신명정(申明亭) 제도 : 명나라에서는 훈인, 택지, 구타 등과 관련한 경미한 분쟁은 이장 또는 마을의 연장자가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설득하여 분쟁을

7) 김철, 2004, “현대 중국의 법문화,” 『사회이론』 제26권, 141쪽.

8) - 진시황(始皇帝, BC 259-BC 210)은 강력한 중앙집권을 실시하면서 전국을 36개의 군(郡)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현(縣), 향(鄉), 정(亭), 리(里)를 두었다. 진, 한에서는 전국을 통치하기 위한 단위로써 진시황의 이러한 군현제(郡縣制)를 기본으로 하였다.

- 龚廷泰, 2006, “中國の民間調停制度,” 『慶應法學』 제6권, pp. 469-470 {허대원, 2012, “중국 인민조정법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22호, 333-334쪽에서 재인용} .

9) 아래에서 소개하는 각 시대별 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전의명, 2011, “중국 조정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논문, 26-27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10) 김지수, 2003, “전통 법문화의 현대적 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의 法史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27호, 286쪽.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들을 ‘리갑노인’(里甲老人)이라고 불렀는데, 마을에서 공평 정직하고 존경을 받는 원로를 추대하여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경미한 분쟁은 반드시 이들의 판단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분쟁의 조정 외에도 불효하는 자들의 성명을 공개적으로 써붙이는 등 백성을 교화하고 훈시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sup>11)</sup> 지역 수령들도 되도록 마을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했으며, 조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극소수가 관청으로 이송되었다.

- (4) 청나라의 경우 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의 완화와 상업경제의 발전 등으로 재산을 다투는 민사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에 대해 조정과 소송절차를 병용하여 처리하였으며, 대부분 소송 제기 이후 지역의 권위자가 조정을 통해 해결한 것이 다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찻집 주인들이 분쟁 당사자들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자리를 마련한 후 합의를 권하여 이로써 수입을 삼기도 했다는 것인데, 이를 ‘흘강차’(吃讲茶, chiang-ch'a)라고 칭했다.<sup>12)</sup>

### III

## 인민조해 제도와 현대 중국의 ADR 동향

### 1. 인민조해 제도의 특징과 「인민조해법」

#### (1) 인민조해 제도란

조정을 중국에서는 ‘조해’(調解)라고 표기하는데, 인민조해(人民調解), 행정조해(行政調解), 법원조해(法院調解)를 중국의 3대 조정으로 통상 구분하고 있다.<sup>13)</sup> 분쟁의 종류와 성격에

11) ‘리갑노인’에 대한 내용은 김지수(2003), 290-292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12) Wall, J. A., 1993, “Community Mediation in China and Korea: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Negotiation Journal*, vol. 9, no. 2, p. 143.

13) - 연구에 따라 인민조해, 행정조해, 법원조해, 중재조해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중재조해는 중재기관에 의해 중재절차 중 실시되는 조정으로 중재절차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CIETAC(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이 대표적 중재기관이다.

- 이하 인민조해제도에 대한 이 단락의 내용은 허대원(2012), 전의평(2011)을 주로 참조하였다.

따라 각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여 각 기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민사조정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방식과 달리, 중국에서는 각종 경미한 분쟁에 대해 인민조해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인민조해 제도는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의사로 인민조해위원회가 법률, 법규, 규칙, 정책 및 공서양속에 따라 설득이나 충고, 협의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sup>14)</sup> 즉 인민조해위원회의 주관 하에 조해위원들이 각종 민사 분쟁과 경미한 형사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며, 합의는 민사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인민조해위원회는 각 지역, 기업, 단체 등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일정한 수준의 법률,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그 자격을 폭넓게 명시하고 있다. 민간분쟁에서 가족, 혼인관련 분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위원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특히 민족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위원회에는 반드시 소수 민족 출신의 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위원의 구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인민조해 제도는 지역의 명망 인사 또는 관리가 제3자로서 분쟁의 해결을 돕고 화해를 도모하였던 중국의 전통적 문화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도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나 ①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②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③ 합의의 내용이 현행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는 3가지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민조해 제도는 ‘분쟁화해의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다. ‘화해는 귀중한 것’(和爲貴)이라는 가치(旗幟) 아래 중립적인 제3자의 의견을 들어 분쟁을 초기에 해결하고자 하였던 전통적 유교 문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오랜 조정의 역사가 만들어낸 인민조해 제도는 대중의 자발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으로써, 전통사회의 관습과 인정, 향촌의 인간관계를 보존하여 사회의 질서와 소통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인민조해법」 제정의 배경

이미 산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존재해오던 전통 촌락의 조정 제도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정부를 세우게 되면서 ‘인민조해’라는 공식 이름을 얻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sup>15)</sup> 1954년

14) 인민조해법(人民調解法) 第二條：本法所稱人民調解，是指人民調解委員會通過說服、疏導等方法，促使當事人在平等協商基礎上自願達成調解協議，解決民間糾紛的活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http://www.npc.gov.cn/huiyi/cwh/1116/2010-08/28/content\\_1593152.htm](http://www.npc.gov.cn/huiyi/cwh/1116/2010-08/28/content_1593152.htm) 검색일：2013.11.07.)

15) 이 단락의 내용은 허대원(2012), 334-336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인민조해위원회잠행조직통칙’(人民調解委員會暫行組織通則)을 공포·시행함으로써 인민조해위원회를 각 도시의 가도(街道), 농촌의 향(鄉)을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각종 민사분쟁 및 경미한 형사사건을 조정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문화혁명 이후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각종 법규가 재정비되었는데, 1989년에는 해당 통칙을 개정하여 대중적 자치조직으로서 각 촌락 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사업체에서도 필요 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성격, 구성, 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등을 명확히 했다.

특히 2007년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조정을 많이 이용하라’고 거듭 강조한 이후 법원을 중심으로 조정사건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고, ‘대조정’(大調解,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 조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조정을 촉진시킴), ‘조정열’(調停熱, 중국 내 광범위한 조정의 열풍을 뜻함) 등의 용어가 생겨나는 등 조정 확산의 분위기가 생겨났다.

이어 2010년에는 인민조해의 권위를 높이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민조해법」(人民調解法)을 발효하였다. 인민조해법은 인민조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단체 등이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인민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협의 이후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사법 확인(司法 確認)<sup>16)</sup>을 신청할 수 있고 확인 이후에는 강제 집행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인민조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 2. 인민조해 제도를 이용한 사례

아래에서는 인민조해 제도를 이용하여 조정된 사례를 두 건 소개하도록 한다.

16) 인민조해법 제33조에서는 “인민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협의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당사자가 사법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가 효력을 발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양측 당사자가 함께 인민 법원에 가서 사법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법 확인이란 조정합의된 내용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있음을 법원이 증명해주는 절차이다.

### 사례 1

A는 한 아파트의 1층을 임대한 세입자로, 1층 창고에 식료품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위층 주민들이 하수도를 수리하던 중 파열되어 물이 1층으로 흘러들어가 A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식료품 등을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A씨는 자신이 시간제로 근무하던 음식점의 자재를 대신 보관 중이었으므로 직장을 잃고 2,000위안을 배상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는 해당 아파트의 위층 5가구가 각 150위안을, 집주인이 100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민들은 액수가 너무 많으며 5위안을 제시했다. 이에 격분한 A는 1층 창고에 송수관의 밸브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체 동의 물 공급을 끊었고, 주민들은 인민조해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해위원은 파출소, 종합처리사무소, 주민 등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들은 단수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A 또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밸브를 열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조해위원회는 양 측의 입장을 들은 후 A에게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반적으로 밸브를 잠근 A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배상액을 조정할 것을 권했고, 주민들에게는 A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랜 설득 끝에 A에게 집주인이 100위안을, 그 외의 가구들이 130위안을 각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민주지아(民主街) 인민조해위원회/ 2012.08.30.<sup>17)</sup>

### 사례 2

중국의 몽고족, 만족 거주구역의 모 촌에 거주하고 있는 A와 B는 오랜 이웃사촌으로 2008년 봄 마을 남쪽에 있는 20묘(중국식 토지 면적의 단위)의 땅을 다른 4명과 함께 도급받았다. 1년이 지난 2009년 봄, A는 작년 토지 분배에 있어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 B의 밭이랑 한 줄을 요구했다. B가 거부하자 A는 환김에 B의 밭이랑 한 줄을 훼손하고 자신의 밭에서 나는 작물을 심었다. 이튿날 이를 발견한 B도 동 밭이랑을 훼손한 후 인민조해위원회에 해결을 신청했다. 인민조해위원회에서는 현장에 도착해 경작을 도급 받은 6가구의 밭 면적을 정밀히 측정하여 면적이 모두 같다는 것을 증명했고, A의 토지는 이랑이 고르지 못해 다소 작아 보이는 것뿐임을 A씨에게 이해시켰다. 또한 A에게 토지 훼손은 B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보상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원회의 설득 끝에 B의 양해로 금전적 보상 없이 A가 B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캉핑(康平)현 타이핑(太平)마을 인민조해위원회/ 2009<sup>18)</sup>

## 3. 영화 <귀주 이야기> - 중국의 근대화와 전통적 가치와의 충돌

1992년에 개봉한 장예모(張藝謀) 감독의 영화 <귀주 이야기>(秋菊打官司)<sup>19)</sup>는 평범한 시골의

17) <http://wenku.baidu.com/view/adb7a28283d049649b6658a8.html> (검색일: 2013.10.29.)

18) <http://wenku.baidu.com/view/5196006fb84ae45c3b358c87.html> (검색일: 2013.10.29.)

촌부로 만삭의 임신부인 ‘귀주’의 남편이 마을 이장과의 언쟁 끝에 폭행을 당해 다치면서 시작한다. 귀주는 이장의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가지만, 이장은 귀주의 남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 아무리 이장이지만 함부로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귀주는 마을 공안을 데려오는데, 공안은 이장이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설득하지만 여전히 이장은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고, “원하는 게 돈이냐”며 귀주를 모욕한다. 공안은 화가 난 귀주에게 ‘화해를 바라는 이장의 선물’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귀주에게 선물을 건네주어 화해를 시도하지만 이장이 아닌 공안의 선물임을 알게 된 귀주는 현의 공안국을 찾아간다. 현에서도 역시 대단찮은 일이 아니니 좋게 화해하라며 치료비 일부만 부담하도록 결정을 내리자 귀주는 농사지은 고추를 팔아 돈을 마련하여 대도시의 공안국을 찾아간다. 공안국장도 귀주의 처지를 동정해 도와주려 하지만 폭행사건에 대한 결정은 현의 결정과 동일하게 내려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귀주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소송 제기 후 집으로 돌아온 귀주는 아기를 낳으면서 난산으로 사경을 헤매다 이장의 도움을 받아 큰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출산하고, 아기의 백일 잔치를 벌여 이장을 초대하는데, 귀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장은 하필 잔칫날 구속된다.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한 귀주의 소송은 이렇듯 귀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마무리되었지만 분쟁이 이로써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귀주에게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 손을 내밀어 준 이장을 결국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그녀의 선택을 과연 정답으로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이 영화를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웃 간의 다툼을 되도록 평화롭게 무마하려는 마을 사람들과 몇 번씩 마을을 오가며 귀주를 달래고 이장을 설득하는 마을 공안의 노력, 그리고 이장의 사과를 받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귀주의 모습이다. 이는 각각 중국의 전통적 향촌 사회의 ‘비소송주의’와 근대화된 중국의 현대 법치주의의 물결을 상징하며, 현재 중국의 모습이기도 하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중국인들의 생활방식, 제도, 문화가 급격히 근대화되면서 전통 사회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중국인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전통적 가치관은 여전히 중국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귀주 이야기>의 마을 사람들과 공안의 노력이 그러하였듯이 인민조해 역시 화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잘 드러난 제도라 할 것이다.

19) 1992년 베니스영화제 금사자상을 수상하고, 여배우 공리가 중국 북부의 한 시골 아낙네인 주인공 ‘귀주’ 역할을 맡아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근대화 물결이 일던 중국의 전통과 현대적 가치의 충돌, 여전히 남아있는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 사회문제로 대두된 빈부격차 등 현대 중국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사진은 영화 <귀주 이야기> 중 주인공 귀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장면

#### 4. 최근의 동향

중국은 최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ADR의 확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특히 각종 조정제도 관련 규정 및 법률을 정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1년 5월, 법원, 검찰,公安部 등이 연합하여 「모순분쟁 대조정 업무의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關於深入推進矛盾糾紛大調解工作的指導意見)을 발표하여 ‘조정 우선의 원칙에 인민 조정, 행정 조정, 사법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인민 조정을 여타 조정, 소송 등의 방법 전에 진행하여 미리 경계하고 소통하며 모순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조정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각 조정의 연계와 협동을 촉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인민조해 제도의 이용률이 감소하자 인민법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민조정합의와 관련된 민사사건의 심리에 관한 규정’(關於審理涉及人民調解協議的民事案件的若干規定) 등을 발효하는 등 이용률 제고를 시도하고 있다.<sup>20)</sup>

특히 중국의 조정은 당사자를 따로 불러 ‘서로 등을 맞대는’(背靠背) 개별심리 방식이 일반적이는데, 당사자 간 이해를 촉진하는 합동심리 방식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한편

20) 이 단락의 내용은 전의평(2011), 32-22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차탁조해’(茶卓調解)라고 하여 법원에서도 민사조정 시 당사자와 담당 조정위원이 차를 앞에 두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추세이다.<sup>21)</sup>

## IV

## 맺음말

이제까지 중국의 법문화와 전통적 조정제도의 모습, 인민조해 제도의 의미와 사례, 현대 중국의 최근 조정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소송과 형벌이 없는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이상으로 삼아 대중을 교화함으로써 대중이 스스로 분쟁의 발생을 피하도록 하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합의하도록 하여 화합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분쟁해결의 모습이었고, 따라서 조정은 중국 고대사회의 일관적인 민사 분쟁의 관리 모델이었다.<sup>22)</sup>

『논어』의 가르침 중에는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이를 피하되 부끄러워함이 없게 되며, 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알며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sup>23)</sup>는 구절이 있다. 이는 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법치주의의 실현인 일도양단식(一刃兩斷式) 재판보다 당사자가 스스로 깨달아 합의점을 찾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정제도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풀뿌리 조정제도인 인민조해와, 최근 중국에서 불고 있는 조정 열풍 등 화해를 존중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연계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기 마음과 소송하면 상스럽고, 남과 소송하면 재앙이 온다’(訟心者祥 訟人者殃, 송심자상 송인자양)는 중국의 속담을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1) <http://news.cpd.com.cn/n19016/n47141/c15051405/content.html> (검색일: 2013.11.12.)

22) 전의평(2011), 26쪽.

23) “子曰, 導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導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이에 유치차격)  
『論語』, 「爲政」 {공자(2012), 49쪽} .